

대전지방법원 2023. 5. 24 선고 2022가단1451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3. 5. 10.

판 결 선 고 2023. 5. 24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12,883,8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2,883,8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22차전11273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. 7. 21. 위 법원으로부터 ‘E는 원고에게 12,452,708원 및 그 중 529,839원에 대하여는 2022. 7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.6%, 3,161,852원에 대하여는 2022. 7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.72%, 3,405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7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을 선고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2) E는 2019. 7. 31.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0년 매수한 후 피고와 1/2 지분씩 공유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처분행위’라 한다)하고 2019. 8. 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E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,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은행 및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 근거] 갑 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 소유이나 E의 요구로 형식상 공유로 등기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증여로 E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도 못하였다.

2) 판단

가)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

것이고,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,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,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다42778 판결, 2000. 12. 12. 선고 2000다45723 판결, 2007. 4. 26.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.

나) 살피건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 당시 E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가. 원상회복의 방법

1) 갑 2호증,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F 주식회사(이하 'F'이라 한다)는 2019. 7. 24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. 11. 15. 취득한 근저당권(채무자 E, 채권최고액 9,600만 원)을 실행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, 그 후 피고가 E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다음 2019. 8. 5. F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인 87,330,232원을 대위변제하고 2019. 8. 6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)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,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.

3)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2019. 7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

1) 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

2)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와 E는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4,8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역시 위 1억 4,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며, 이 사건 처분행위 직후 말소된 F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87,330,23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중 E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0,334,884원 $\{= 60,669,768\text{원} (= 1\text{억 } 4,800\text{만 원} - 87,330,232\text{원}) \times 1/2\}$ 이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.

3)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,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,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은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. 따라서 제1의 가. 1)항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액(2022. 7. 21.부터 변론종결일까지 294일분의 지연손해금 포함) 13,574,313원 $\{= 12,452,708\text{원} + 70,844\text{원} (= 529,839\text{원} \times \text{연 } 16.6\% \times 294\text{일}/365\text{일}) + 502,230\text{원} (= 3,161,852\text{원} \times \text{연 } 19.72\% \times 294\text{일}/365\text{일}) + 548,531\text{원} (= 3,405,000\text{원} \times \text{연 } 20\% \times 294\text{일}/365\text{일}), \text{원 미만 버림}\}$ 중 원고가 구하는 12,883,801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. 7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2,883,8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,883,8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

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준호

별지

1동의 건물의 표시

대전 서구 G, H에 있는

I아파트 J동

[도로명주소] 대전 서구 K
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4층 아파트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전 서구 G 대 19,853㎡

대전 서구 H 대 65,981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L

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벽식구조 71.93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85,834분의 37.999. 끝.

